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우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982
----------	-------

발의연월일 : 2026. 5. 14.

발 의 자 : 김우영 · 김문수 · 황정아
김 윤 · 송재봉 · 한준호
박민규 · 최민희 · 조인철
이정현 · 이광희 · 이주희
안도걸 의원(13인)

제안이유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미디어의 범위가 저널리즘 기능을 수행하는 매체를 넘어서 상호 간의 소통기능을 수행하는 SNS와 OTT 등으로 확장되고 있어 미디어의 영향력 및 파급효과가 커지는 동시에 허위조작정보(일명 가짜뉴스)와 같은 무분별한 정보가 생산·유통되는 등 그 부작용도 커지고 있어 분별력 있는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정부의 미디어교육 관련 정책과 사업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과 그 산하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종합적인 추진이 어려우며,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한 실정임.

따라서 미디어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콘텐츠에 대한 국민의 접근능력, 비판적 이해와 창의적 활용능력, 민주적 소통능력을 증진하고, 국민의 시민의식 함양, 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의 활성화 및 미디어의

역기능 대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미디어교육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미디어교육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의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는 등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미디어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미디어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능동적 활용 능력을 높이고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미디어와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능력, 비판적 이해능력, 창의적 활용능력, 미디어의 역기능의 대응 능력, 민주적 소통능력 등을 증진시켜 국민의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미디어교육”이라 하고, 미디어교육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미디어교육시설”, 미디어교육과 관련한 정책·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도교육청 및 공공기관을 “미디어교육 시행기관”이라 함(안 제2조).

다. 국민이 미디어의 기능과 효과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활

- 용하도록 하여 미디어의 공공성, 문화의 다양성 및 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미디어교육의 기본원칙으로 함(안 제3조).
- 라.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는 미디어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위촉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자격과 추천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마. 위원회 위원들의 신분보장, 결격사유, 겸직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바. 위원회는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들어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7조).
- 자. 미디어교육 시행기관은 평가지침에 따라 미디어교육 추진 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안 제18조).
- 사. 미디어교육 시행기관이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소관 미디어교육 전문기관 및 교육시설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 아.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디어교육 관련 전문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미디어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미디어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능동적 활용 능력을 높이고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디어교육”이란 미디어와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 등에 대한 접근능력, 비판적 이해능력, 창의적 활용능력, 미디어의 역기능의 대응 능력, 민주적 소통능력 등을 증진시켜 국민의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2. “미디어교육시설”이란 미디어교육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미디어 관련 사업자”란 미디어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콘텐츠의 제작·유통·이용제공 및 이에 관한 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미디어교육 시행기관”이란 미디어교육과 관련한 정책·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

치도, 시·도교육청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미디어교육의 기본원칙) ① 미디어교육은 국민이 미디어의 기능과 효과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익성, 문화의 다양성 및 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미디어교육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미디어교육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미디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미디어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미디어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미디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2.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리가 미디어로 인하여 침해받거나 사회적 취약계층이 미디어로부터 소외받지 않도록 할 것
3. 미디어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할 것
4. 미디어를 통하여 공공복리가 증진되고 문화의 다양성이 확산되도록 할 것
5. 청소년이 건전한 미디어 이용과 콘텐츠 제작을 할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할 것

6. 미디어교육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기관 간 소통 및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② 국가 등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미디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미디어 관련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미디어 관련 사업자는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미디어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미디어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등은 미디어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미디어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미디어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

행,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8조에 따른 미디어교육 평가지침 마련 등 평가에 관한 사항

3. 미디어교육 지원업무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4. 미디어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및 조사

5. 미디어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미디어교육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미디어교육의 지원에 관한 시책의 추진 및 예산 등에 대하여 미디어교육 시행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미디어교육 시행기관 간에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는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담당할 전문위원과 조사요원을 둘 수 있다.

⑦ 그 밖에 소위원회 구성·운영 및 전문위원, 조사요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제4항에 따

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1명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1명, 교육부차관, 국방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1명,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1명, 성평등가족부차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2명 이내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 소속 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각 2명씩 추천하는 사람 6명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미디어교육 관련 민간단체의 의견을 받아 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3명

⑤ 위촉위원은 미디어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 및 전문성 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미디어교육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미디어교육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0

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미디어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인공지능기술 또는 지능정보기술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 등을 합산하여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

⑥ 제5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姓)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위촉해야 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위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그 보궐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신분보장과 직무상 독립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제9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5.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6.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②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내·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제9조제3항을 제외한 공무원으로서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

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6.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12조 (검직금지 등) ①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미디어교육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미디어교육 관련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한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하면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 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회의장에서 방청하려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회의 개최 전까지 방청권을 발급받아 방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이나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등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한다.

제16조(보수, 수당 등) 위원에 대한 보수 등 처우, 전문위원·조사요원 및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17조(미디어교육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위원회는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들어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디어교육의 기본방향

2. 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및 연도별 지원 사항

3. 미디어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생애주기별, 계층별, 지역별 미디어교육에 관한 사항
 5. 학교 미디어교육에 관한 사항
 6. 미디어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미디어교육 콘텐츠의 국내외 제작과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미디어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과 지원에 관한 사항
 9. 미디어교육 전문기관의 확충과 지원에 관한 사항
 10. 미디어교육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미디어교육 정책 관련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12. 시행기관 간 역할 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기본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시행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미디어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제출받은 시행계획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미디어교육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는 미디어교육 정책 및 사업의 종합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기관의 미디어교육 추진 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행기관은 제1항의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시행기관의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의 구체적 내용,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제3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 및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공개의 대상·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의견 청취) 위원회는 제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디어관련 사업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0조(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① 미디어교육 시행기관은 국민에게 다양한 미디어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미디어교육 시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으로 연구·개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관·단체의 범위와 그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미디어교육 전문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미디어교육 시행기관은 소관 미디어교육 전문기관 및 미디어교육 관련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미디어교육 시행기관은 소관 미디어교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의 확보·관리 등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③ 미디어교육 시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미디어교육 전문기관 또는 미디어교육 관련 민간단체 간 협의체의 구성·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미디어교육 전문기관 및 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권한의 위탁)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디어교육 관련 전문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연차 보고서) ①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